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한정애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,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가동정보를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전산망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에 현행 적산 전력계, 굴뚝 자동측정기기외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추가(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)
- 나.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을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 하고, 대상시설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 위임(안 제17조제6항 신설)
- 다.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가동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제2항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 중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“자”를 각각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부착하여야”를 “부착해야”로 하고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사물인터넷(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·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)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·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(이하 “사물인터넷 측정기기”라 한다). 다만,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설치를 면제한다.

제17조제5항 중 “부착하여야”를 “부착해야”로 한다.

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 하며,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,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와 같다. 이 경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, 측정기기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기

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 제목 중 “굴뚝 원격감시체계”를 “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측정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(이하 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9조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 관제센터 및 제2항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”로 한다.

제19조의3제1항 중 “별표 3의2와”를 “별표 3의3과”로 하고, 제2항제3호 중 “별표 3의2”를 “별표 3의3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“환경기사 1급 또는 2급”을 “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”로 한다.

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하고,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15 제2호터목 중 “응하지”를 “따르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이후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는 배출시설 중 별표 1의3에 따른 4종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까지, 같은 표에 따른 5종 사업장은 2023년 12월 31까지 각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.

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이 된 배출시설은 2024년 12월 31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 이전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.

[별표 3의2]

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,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(제17조제6항 관련)

1. 부착 면제

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한다.

가.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
나.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(전력계에 한정한다)

다. 고정적인 전기사용 장치를 확인할 수 없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(전력계에 한정한다)

라. 흡수에 의한 시설 중 pH계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

마.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, 개보수 등을 할 계획이 있는 경우

2. 부착 시기 및 유예

가.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한다.

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이 4종 또는 5종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<u>자</u>가 된다.</p>	<p>제5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<u>사람이</u>-----.</p>
<p>제6조(실무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실무위원장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 관련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,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2. (생략)</p> <p>3. 대기환경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<u>자</u>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<u>자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환경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<u>자</u>가 된다.</p>	<p>제6조(실무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<u>사람</u>----- -----<u>사람</u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사람이</u>-----.</p>

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,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, 측정 항목, 부착 면제,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(猶豫)는 별표 3과 같다.

<신 설>

⑥ (생 략)
제19조(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(생 략)

<신 설>

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 하며,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,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와 같다. 이 경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, 측정기기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제19조(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-----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측정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(이

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. 다만,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·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. ---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대기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905